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7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김선민·장종태·전진숙

황운하 · 김준형 · 신장식

정태호 · 김 윤 · 서영석

박상혁 • 백선희 • 김남희

차규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 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 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 6.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 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신 설> 5.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 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 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 이 없을 것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 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원하는 경우
-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
 수
- 5.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 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 령을 받은 경우
- 6.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료 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 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 항을 위반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u>④</u>·<u>⑤</u> (생 략)